

청주지방법원 2023. 4. 20 선고 2023가단512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조합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4. 20.

## 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0. 29.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  - 가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. 10. 29. 접수 제1335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  - 나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. 10. 29. 접수 제133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  - 다. 별지 목록 제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. 10. 29. 접수 제13357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한  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접수 등기번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, 주문과 같이 선택한다)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 판결)

판사 임색별

별지